

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80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전화번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	
	사업소명			
	사업장소	전화번호		
	담당부서	담당자		

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시설 개요 2.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시설주변의 환경 3.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운영계획 개요 4. 방사선원의 특성·위치 및 제원 5. 안전시설 개요 ※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원자력안전위원회

원자력안전위원회

신청인